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87호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창원시의 장애인친화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친화쉼터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친화쉼터의 설치 및 수행 업무, 위탁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

발의연월일 : 2026. 11. 18.

발 의 의 원 : 백승규・곽은정・김원일・박영주・이우완 이정희・장병운・전홍표・진형익・홍용채 황점복 의원(11명)

1. 제안이유

창원시의 장애인친화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친화쉼터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친화쉼터의 설치 및 수행 업무, 위탁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장애인친화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친화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교류 공간 제공
2. 문화·취미·오락 활동 지원
3. 건강생활 상담·지도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이용수요, 기존 시설과의 중복 여부 및 활용 가능성, 장애유형별 특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쉼터의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쉼터의 운영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쉼터의 설치 기준, 이용 대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장애인친화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친화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교류 공간 제공 2. 문화·취미·오락 활동 지원 3. 건강생활 상담·지도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이용수요, 기존 시설과의 중복 여부 및 활용 가능성, 장애유형별 특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쉼터의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쉼터의 운

	영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쉼터의 설치 기준, 이용 대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의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개인 사업장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7.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개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초조사)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기반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

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교육·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